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0. 9. 8. (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광현)

검 토 보 고 서

(보고자 : 전문위원 조광현)

1. 검토안건

- 안건명 :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20. 8. 25
- 회부일 : 2020. 8. 26 (의안번호 : 20-86)

3. 제출이유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 예정인 서울청년센터 마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 서울청년센터(마포)의 운영사무
- 나. 위탁사무내용 : “서울청년센터 마포”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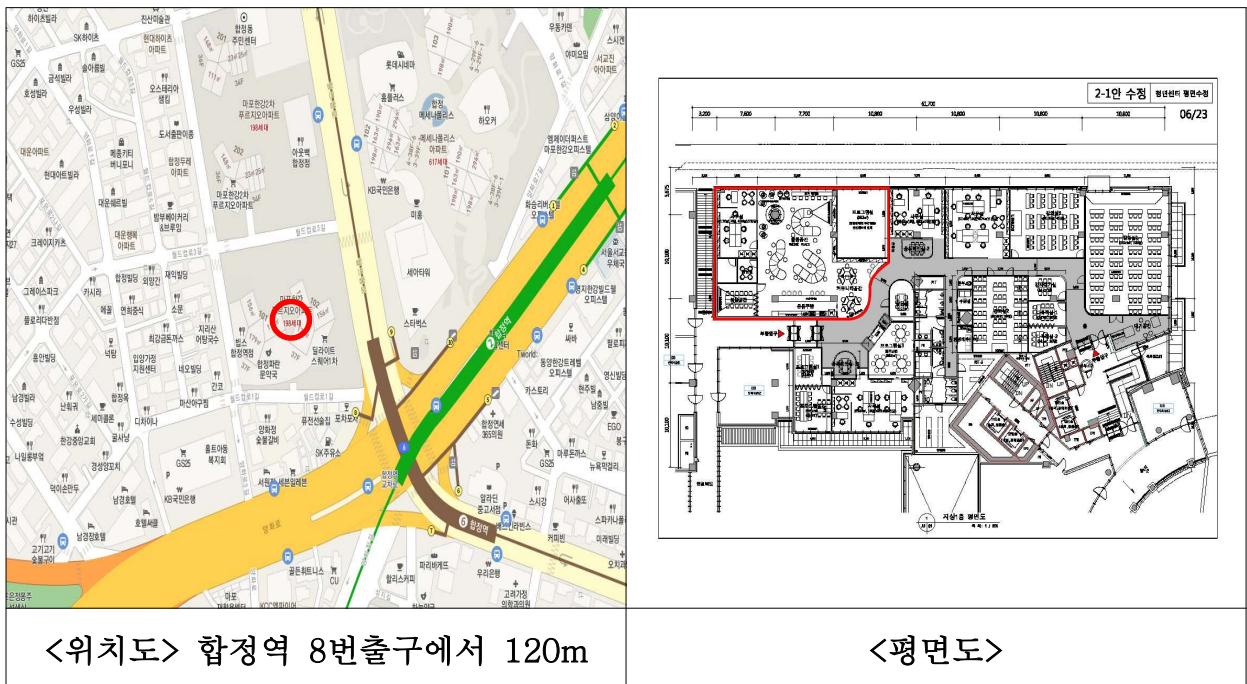
다. 위탁시설 개요

- 1) 위 치 : 월드컵로1길 14(합정동) 마포한강푸르지오 지상1층 제P101호(구 신한류플러스센터 자리)
- 2) 면 적 : 270.8 m^2 (약 82평) ▶ 공유면적(96 m^2) 제외
- 3) 운영인력 : 6명(상담, 정책전달, 프로그램 운영, 공간운영, 운영지원 등)

[표1] 공간구성(안)

공간구분	공 간 활 용 내 용
회의실 (성장공간)	청년들의 토론·회의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회의실
청년라운지 (커뮤니티공간)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위한 휴게 공간
세미나실 (활동공간)	각종 강의, 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 공간
상담실	주거, 금융, 일자리 등 생활 상담 컨설팅 운영 및 청년정책 홍보 등 정보 제공(방음 필수)
공유주방	간단한 식음료 등을 조리하고 취식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
휴게실 (수면실)	일상에 지친 청년들이 잠시 들러 음악 등을 들으며 쉬어가는 공간
사무실	센터장(1명), 청년지원매니저(5명)로 구성된 직원 사무실

[표2] 위치도 및 평면도



[표3] 운영업무 체계

서울시	운영지원단(광역센터)	서울청년센터(마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총괄 • 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인력사업비 지원 • 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센터 운영지침 마련 • 청년센터 서비스 관리 • 전문인력 양성, 교육매니징 • 센터간 사례관리 및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상담·정책서비스 운영 • 청년정책 홍보 및 전달 • 지역 특화사업 운영 • 정산 및 운영결과 보고

라. 민간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2.12.31.

마.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바. 수탁기관 선정주체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별도 구성)

사.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별첨)

아. 추진일정

- 1) 공간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공사 : 2020. 7 ~ 10.
- 2) 민간위탁심의(구의회) : 2020. 9월 중
- 3) 민간위탁업체 공모 및 선정 : 2020. 9. ~ 10.
- 4) 시범운영 : 2020. 11월 중
- 5) 개관 : 2020. 12월 중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청년기본법 제4조, 제17조~제24조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조례 제16조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청년센터 마포”의 운영사무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임.
- 위탁운영 시설의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2022.12.31.까지 약 3년으로 하고, 위탁사무의 범위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로 주요 위탁 사무는
 - 청년의 수요에 맞는 종합상담 지원체계 구축 사업
 - 청년 욕구에 맞는 공공서비스 연계지원 및 지원 사업
 - 청년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 지역별·권역별 청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 및 실행 사업 등입니다.
- **종합 검토의견**은 향후 설치 될 “서울청년센터 마포”는 기부체납지인 합정동 마포한강푸르지오 지상 1층 270㎡ (약 82평)의 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인생을 재조명하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휴식처 제공, 진로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인 네트워크 형성 등을 제공하는 시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시설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거, 금융, 일자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들에게 유익한 시설이 되도록 각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비용추계서]

연간 위탁비용 산정 추계(2020년 기준)

소요예산 : 453,438천원(전액 시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세부내용	비고
	계	소계		
시설비및부대비 (리모델링비)	453,438	225,555	○ 서울청년센터 마포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90,000	○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 관련 자산취득비	
민간위탁금		137,883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 센터장(5급) 3,565천원×1명×3개월 ⇒ 10,695천원 ○ 매니저(7급) 2,746천원×5명×3개월 ⇒ 41,196천원 ○ 기본급 외 급여 38,107천원 ○ 홍보비, 사업비 및 활동비 등 47,885천원	센터장, 매니저 10호봉 적용 (운영:3개월)
합계		453,438		

※ 2020년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 계획(서울시 청년청-799호, 2020.1.17.)에 따라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전액 시비 지원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국무조정실(청년정책과) 044-200-6327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제16956호, 2020. 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19. 1. 1.]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159호, 2018. 5. 3., 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아동청년과), 02-3153-8960

-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